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19

발의연월일: 2025. 5. 14.

발 의 자: 강경숙ㆍ이병진ㆍ김문수

황운하 · 서왕진 · 신장식

용혜인 • 윤종오 • 전종덕

정춘생 · 차규근 · 한창민

이해민 · 백승아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,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 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, 교육감선거에 입후 보하려는 교육공무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,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선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 임(안 제23조제1항,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0518호), 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10521호), 「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520호) 및 백 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18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지방공무원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 립학교의 교원"을 "지방공무원"으로 한다.

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직 중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원인 경우는 제외한다.

제47조제1항 단서 중 "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
- 2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

제49조제1항 전단 중 "제60조까지"를 "제60조(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후보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교육감선거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겸직의 제한) ① 교육감은	제23조(겸직의 제한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	
<u><단서 신설></u>	만, 제2호에 해당하는 직 중
	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
	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원인
	경우는 제외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에	2
규정된 국가공무원과 「지방	
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	<u>স</u>
지방공무원 및 「사립학교	<u>방공무원</u>
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	
립학교의 교원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7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	제47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-
「공직선거법」 제53조제1항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	
은 선거일 전 90일(제49조제1	
항에서 준용되는 「공직선거	
법」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	

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)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. 다만, 교육감선 거에서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</u>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 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49조(「공직선거법」의 준용) 저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「공직선거법」 제3조부터 제8조까지, 제8조의2부터 제8조 의4까지, 제8조의6, 제9조, 제10 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11 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, 제30조부

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
<u>해당하는</u>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
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
<u>는 경우</u>
2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
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교
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
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
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휴직
<u>하는 경우</u>
② (현행과 같음)
세49조(「공직선거법」의 준용)
①

터 제46조까지, 제48조부터 제5 0조까지, 제52조,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, 제58조부터 제60조 까지,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 까지, 제61조, 제62조부터 제74 조까지, 제79조부터 제82조까 지, 제82조의2,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, 제85조, 제86조 (제2항제2호 단서 · 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), 제87 조부터 제108조까지, 제108조의 2,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, 제122조의2, 제135조(제1항 단 서는 제외한다), 제135조의2, 제146조, 제146조의2, 제147조 부터 제149조까지, 제149조의2,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, 제16 1조부터 제166조까지, 제166조 의2,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,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, 제21 1조부터 제217조까지, 제219조 부터 제262조까지, 제262조의2. 제262조의3, 제263조부터 제265 조까지, 제265조의2, 제266조부 터 제270조까지, 제270조의2, 제271조, 제271조의2, 제272조,

<u>제60조(같은 법 제60조제1</u>
항제4호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
원과 지방공무원 중 「교육공
무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
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이
제47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
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까
<u> </u>

제272조의2, 제272조의3, 제273 조부터 제277조까지, 제277조의 2, 제278조, 제279조 중 시·도 지사 및 시·도지사선거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·

②·③ (생 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